

議員倫理實踐規範(案)

第1條 (倫理綱領 遵守) 道議會 議員은 道議會 議員 倫理綱領을 誠實히 遵守하여야 한다.

第2條 (品位 維持) 道議會 議員은 公私生活에 있어서 道議員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條 (清廉의 義務) 道議會 議員은 職務와 關聯하여 清廉하여야 한다.

第4條 (職權濫用 禁止) ① 道議會 議員은 그 지위를 濫用하여 不當한 影響力을 便하거나 그에대한 對價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② 道議會 議員은 그 지위를 濫用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처분에 依하여 財產上의 權利, 利益 또는 地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爲하여 그 取得을 斡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機密漏泄 禁止) 道議會 議員은 職務上 取得한 國家 安全保障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國家機密을 正當한 事由없이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謝禮金) 道議會 議員은 講演, 其他 活動과 關聯하여 個人, 團體 또는 機關으로부터 通商의이고 慣例의인 基準을 넘는 謝禮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7條 (兼職 禁止) 道議會 議員은 關係規定에서 禁止하고 있는 職을 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 (迴避義務) 道議會 議員은 審議對象 案件이나 道政監査 또는 調査의 事案과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事前에 소명하고

關聯活動에 參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9條 (虛禮虛飾 禁止) 道議會 議員은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을 誠實히 遵守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등 勤儉 節約하는 生活을 實踐하여야 한다.

第10條 (國外活動에 관한 報告등) 道議會 議員은 職務上 國外活動을 하는 경우에는 誠實히 申告 또는 報告하여야 한다.

第11條 (會議 出席) 道議會 議員은 會期中 結婚式 主禮등을 理由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등 各種 會議에 正當한 事由없이 不參함으로써 議政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住民 啓導) 道議會 議員은 道政發展의 旗手로서 住民을 啓導하고 靑少年 善導에 앞장서야 한다.

附 則

이 規定은 1991年 10月 부터 施行한다.